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
제정 2000. 11. 29 조례 제1216호 개정 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 일정개정 2013. 8. 1 조례 제1935호 일부개정 2014. 10. 17 조례 제2026호(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) 일부개정 2016. 11. 18 조례 제2207호 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법제업무운영규정」(대통령령)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8, 6, 16, 2016, 11, 18〉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자치법규"라 함은 조례 · 규칙을 말한다.
- 2. "입법"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·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.
- 3. "입법예고"라 함은 주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입법예고 대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 11. 18〉
 - 1. 공중위생
 - 2. 환경보전
 - 3. 농지 기타 토지제도
 - 4. 도시계획
 - 5. 건축
 - 6. 도로교통
 - 7. 시험에 관한 사항
 - 8. 정보화관련 제도
 - 9. 기타 주민의 권리·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

-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.
- 제4조(입법예고의 예외)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입법예고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. 〈개정 2016. 11. 18, 2018. 7. 31〉
 - 1.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
 - 2.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
 - 3.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
 - 4.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5.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제5조(예고방법)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시보 외에도 신문·방송·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·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 11. 18〉
 - 1.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
 - 2. 입법취지
 - 3. 입법 주요내용
 - 4.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필요한 사항
 - ②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. 〈개정 2016. 11. 18〉
- 제6조(예고기간)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. 〈개정 2016. 11. 18〉
- 제7조(관계기관 협의 등)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·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·승인을 완료한 후 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자치법규안 복사 등) ① 시장은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 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「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〈개정 2008. 6. 16, 2014. 10. 17〉
- 제9조(의견제출 및 처리)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 〈신설 2013. 8. 1〉
 - 1. 주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
 - 2.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제10조(공청회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 제38조, 제38조의2, 제38조의3,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. 〈개정 2008. 6. 16, 2016. 11. 18〉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〉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
부칙〈2013. 8. 1 조례 제1935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4. 10. 17 조례 제2026호,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 중 "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"를 "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"로 한다.

제4조 및 제5조 생략

부칙〈2016. 11. 18 조례 제220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